

학칙시행세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세칙은 동서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학칙 시행 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학부이동 및 전공변경

제 2 조(개념) 학부이동은 학생이 소속한 학부 외의 교내 다른 학부로 소속을 변경하는 것을 뜻하며, 전공변경은 동일 학부 내에서의 전공이동을 말한다.

제 3 조(자격) ① 학부이동 및 전공변경은 1회에 한하여 제 2학년 1학기 초, 제 3 학년 1학기 초 및 제 4학년 1학기 초에 할 수 있다. 단 3학년 편입생은 제 3학년 2학기초 또는 제 4학년 1학기 초에 할 수 있다. <개정 2017.09.01>

② 학부이동 및 전공변경은 전입학부별 입학정원의 30%이내에서 허용하되 재학생은 평균평점이 2.0이상이어야 한다. 단, 폐지된 전공 소속 학생은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03.01>

③ 학부이동을 지원하는 자가 허가예정인원을 초과할 때의 선발기준은 총 평균 평점 성적순으로 한다.

④ 특기자로 입학한 자는 다른 학부로 학부 이동할 수 없다.

⑤ 학부이동은 재학중인 학생으로 한다.

⑥ 폐지된 전공의 복학생은 본인이 원하는 전공으로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1.03.01>

제 4 조(원서제출) 학부이동 및 전공변경을 지원하는 자는 전출하고자 하는 학부의 학부장 및 전공 책임교수의 동의를 얻어 현금등록일 이전까지 학부이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3-1-2-2 제1장 학부

제 5 조(허가) 학부이동 및 전공변경의 허가는 재학성적과 지도교수의 의견을 참작하여, 진출전공 책임교수, 학부장 그리고 전입전공 책임교수, 학부장 및 교무처장으로 구성하는 학부이동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제 6 조(교과이수) ① 학부이동 및 전공을 변경한 학생은 변경된 학부 또는 전공의 교과과정에 따라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기득학점 및 성적은 전입 학부장이 인정할 수 있다.

② 학부이동 및 전공변경한 자의 재학연한에는 종전의 재학연한을 통산한다.

제 3 장 휴학 및 복학

제 7 조(휴학구분 및 구비서류) ① 휴학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고, 각각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휴학 할 수 있다.

1. 일반휴학

가. 질병휴학 : 질병으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을 경우 국·공립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발행하는 1개월 이상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 가사휴학 : 가정 사정 또는 개인적인 사유로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지도교수, 학부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학기 개시일 이후에는 등록금을 납부 후 가사휴학을 할 수 있다. 단, 1학년 1학기에는 가사휴학을 할 수 없다.

다. 임신·출산휴학 : 임신·출산으로 인해 휴학할 경우 1회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병원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라. 육아휴학 :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학생은 양육을 위해 휴학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한다. 단, 1회 2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2. 군입대휴학 : 군입대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입영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숙려휴학 : 숙려휴학 신청자는 지도교수의 요청과 심사를 통해 휴학할 수 있으며, 학기 개시일 이후 수업 1/4선까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할 수 있다.

② 제1항 제1호에 의거 휴학 중이던 자가 군입대를 하게되면 입영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휴학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휴학연기원을 제출하지 못하고 입영한 자는 군복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휴학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1호에 의거 휴학한 자로서 군입영일자가 해당학기 수업일수 2/3선 이전 휴학은 휴학횟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 기말고사만료시점 이후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거 휴학한 자가 휴학사유의 소멸로 다음학기 수업일수 1/3선 이전 휴학취소원을 제출하면 휴학을 취소할 수 있다. 휴학 취소원에 의한 휴학은 휴학횟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전문개정 2018.09.01.]

제 8 조(휴학원 제출절차)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휴학원에 휴학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도교수와 학부장을 거쳐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9 조(휴학허가) 휴학허가 및 휴학기간 연장은 총장이 정한다. 단, 제 3학년 편입 및 재입학자의 일반휴학은 2학기 이내로 한다.

제 10 조(귀향신고 의무) ① 제7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휴학한 자가 입영 후 신체검사 결과에 의하여 귀향조치 되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교무처에 귀향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01.>

② 귀향신고를 하는 시점이 수업일수 1/3선 이전인 경우는 복학원을 제출하여 복학하여야 하고, 수업일수 1/3선 이후는 가사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0.01., 2018.09.01.>

제 11 조(제출기간) ① 제7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휴학은 사유 발생 후 30일 이내에 휴학원서를

3-1-2-4 제1장 학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01.>

② 제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휴학은 입영전일까지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01.>

제 12 조(등록금 인정) ① 등록금을 납입하고 제7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휴학한 자가 학기 개시 후 수업일수 1/4선 이내에 휴학하였을 경우에는 복학시 등록금 차액을 면하고, 수업일수 1/4선 이후 휴학하였을 경우에는 휴학시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복학시 당해학기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복학시 납부하여야 할 수업료 중 백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개정 2010.10.01., 2018.09.01>

1. 학기개시 1/4선 이내 휴학한 경우 : 복학시 수업료 전액을 면제한다.
2. 학기개시 1/4선 경과후 학기개시 30일 이내 휴학한 경우 : 복학시 수업료 1/6을 납부 한다.
3. 학기개시 30일 경과후 부터 학기개시 60일까지 휴학한 경우 : 복학시 수업료 1/3을 납부 한다.
4. 학기개시 60일 경과후 부터 학기개시 90일까지 휴학한 경우 : 복학시 수업료 1/2을 납부 한다.
5. 학기개시 90일 경과후 휴학한 경우 : 복학시 수업료 전액을 납부 한다.

② 등록금을 납입하고 제7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휴학한 자가 해당학기 수업일수 2/3선 이전에 입영한 경우에는 복학시 해당 학기 등록금이 면제되며, 해당학기 수업일수 2/3선 이후에 입영할 경우에는 학점취득 여하를 막론하고 복학시 해당 학기 등록금의 전액을 징수한다.<개정 2010.10.01., 2018.09.01>

③ 학기 개시후 수업일수 1/4선 이내에 제7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휴학한 자가 제7조 제2항에 의거 휴학 연기원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복학시 등록금의 금액이 휴학당시 납입한 금액보다 증액된 경우라도 그 차액은 납부하지 않으며, 학기 개시 수업일수 1/4선을 경과하여 제7조 제

1항 제1호에 의거 휴학한 자가 제7조 제2항에 의거 휴학연기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최초 휴학 일을 기준으로 제1항 각호의 기준에 따라 수업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01., 2018.09.01.>

제 13 조(휴학자의 성적인정) ① 군휴학자는 당해 학기수업일수의 2/3선 이상을 출석하고, 휴학한 자의 기말성적은 당해학기 수업일수 2/3선까지의 출석, 과제, 연습 및 시험성적을 100% 인정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0.10.01>

② 일반휴학자는 기말고사 만료일 이전의 휴학은 당해학기 성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제 14 조(복학절차) ① 휴학자의 복학은 해당 학기 현금등록기간에서 수업일수 1/3선에 한하여 허가한다. <개정 2010.10.01>

② 복학시에는 복학원 및 복학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병역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건강진단서)를 첨부하여 학부장을 거쳐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장 부 전 공

제 15 조(이수신청 및 이수자격) ① 부전공이수신청은 전공배정학기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절차는 기말고사 만료 후부터 해당 학기 수강신청 정정기간까지 부전공 이수신청서를 제출하여 소속 전공 책임교수, 학부장 및 부전공 학부장을 경유, 교무처장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부전공이수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신청학년별 수료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성적평균평점이 2.0이상이어야 한다. 단, 편입생은 재학 1학기이상의 성적을 취득하여야 부전공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09.01.>

③ 전공의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부전공자를 전공별로 제한할 수 있으며 디자인대학은 실기시

3-1-2-6 제1장 학부

험을 가할 수 있다. <개정 2006.10.1., 2014.01.01>

④ <삭제 2017.12.01.>

⑤ 부전공은 학생의 희망에 따라 자유 선택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 부전공의 이수승인을 받은 자가 졸업학기까지 소정의 부전공 취득학점을 취득하지 못할 때에는 부전공 과정에서 탈락되며 기취득학점은 타전공학점 또는 자유선택학점으로 인정한다.

⑦ 부전공 이수지원자가 부전공이수를 위하여 졸업시기를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졸업 해당 학기 등록시에 졸업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⑧ <삭제 2017.12.01.>

제 16 조(부전공 이수과목) ① 부전공을 지원하는 자는 따로 정한 규정이 없는 한 부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전공의 전공과목 중 18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부전공을 위해 이수한 교과목이 주전공의 과목과 중복될 시는 주전공 과목으로만 인정한다. <개정 2017.12.01.>

③ 부전공의 교과목 중 실험·실습을 요하는 과목이 있을 경우, 소정의 실험·실습비를 부과할 수 있다.

제 5 장 복 수 전 공

제 17 조(이수신청) ① 복수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기말고사 만료 후부터 해당학기 수강신청 정정기간까지 복수전공이수신청서를 제출하여 소속 전공 책임교수, 학부장 및 복수전공 학부장을 경유, 교무처장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12. 16>

② 복수전공 이수신청은 전공배정학기 이후부터 신청하여 이수 할 수 있다.

③ 전공의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복수전공자의 수를 전공별로 제한할 수 있다.

④ 디자인대학은 실기시험을 가할 수 있다. <개정 2006.10.1., 2014.01.01.>

⑤ 교양학위트랙의 경우는 본전공을 배정받은 후 소정기간에 신청할 수 있으며, 편입생은 본 교에서 1개 학기 이수 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16>

제 18 조(승인요건) ① 복수전공 이수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신청학년별 수료학점이상을 이수하고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2.0이상이어야 한다. 단, 편입생은 재학 1학기이상의 성적을 취득하고 성적평균평점이 2.0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7.09.01.>

② 교양학사학위트랙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시 전체성적의 평점평균이 2.0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17.09.01.>

제 19 조(이수학점) ①복수전공지원자는 이수하고자 하는 전공의 전공과목 중 전공필수과목을 포함하여 최소 전공학점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01.>

② 교양학위트랙 신청자는 신청 전에 이수한 교양학위트랙 관련 교과목을 학위트랙의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교양학위트랙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선택교양(인문사회, 과학기술, 문화예술, 글로벌)교과목과 중복 인정하지 않는다. <신설 2016. 12. 16><개정 2017.03.01.>

제 20 조(복수전공자의 부전공 학점인정) 부전공을 이수한 자가 복수전공을 희망할 경우 기 취득한 부전공 취득학점은 동일과목의 학점을 18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제 21 조(복수전공의 이수년한 및 졸업) 복수전공을 신청한 자는 재학년한을 1년 간 연장할 수 있다.

제 22 조(복수전공의 포기) ① 복수전공이수 신청자가 사정에 의하여 동 이수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복수전공 포기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복수전공 이수자가 복수전공을 포기할 시에는 기취득학점을 타전공학점 또는 자유선택 학점으로 인정 한다.

제 23 조(학위수여) 주전공학위와 복수전공학위는 각 전공 이수 완료시 별도로 수여한다.

제 6 장 연 계 전 공 <신설 2012.03.01>

제 24 조 (자격 및 신청) ① 연계전공을 이수하려고 하는 자는 본전공을 배정받은 후부터 소정기간에 연계전공을 신청할 수 있으며, 편입생은 본교에서 1개 학기 이수 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09.01.>

② 연계전공 이수 신청기간은 따로 정하여 공고하며, 이수 신청은 지정된 이수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정된 기간에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25 조 (지원범위 및 전공인정) ① 모든 학부과정 재학생은 연계전공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연계전공은 본 전공으로 선택할 수 없으며, 부전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단, 연계전공 포기원을 제출한 자는 연계전공에서 이수한 학점이 18학점인 경우 연계부전공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 26 조 (선발인원 및 기준) 연계전공의 정원, 이수자의 신청 및 선발인원과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각 연계교육과정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27 조 (전형방법) ① 연계전공 신청자는 소정의 선발전형을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선발전형의 세부사항은 연계전공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28 조 (학점이수) ① 연계전공 지원자는 연계전공의 전공과목 중 3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01.>

② 연계 전공자가 연계전공 신청 전에 이수한 연계전공 관련 교과목은 연계전공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연계전공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본전공, 부전공, 복수전공 교과목과 중복 인정하지 않는다.

제 29 조 (이수포기) 연계전공을 중도에 포기할 경우 이수 교과목은 타전공으로 인정한다.

제 30 조 (졸업사정 및 시기) ① 연계전공 졸업사정은 연계전공위원회에서 주관한다.

② 연계전공 주관대학 학부는 연계전공 이수자의 졸업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본전공 대학·학부에 통보한다.

제 31 조 (학위수여) 연계전공자가 본전공의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때에는 각 전공의 학위를 동시에 수여한다.

제 32 조 (제증명) 연계전공 이수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표기하여 증명서를 발급한다.

1. 재학증명서 : 본전공과 연계전공을 함께 표기
2. 성적증명서 : 본전공과 연계전공을 명시하며, 이수과목은 본전공과 연계전공이 구분될 수 있도록 표기
3. 졸업증명서 : 본전공과 연계전공을 함께 표기

제 7 장 연 계 교 육

제 33 조(프로그램유형) 연계교육프로그램은 융합기초모듈, 창의융합모듈, 마이크로 디그리(Micro Degree)로 구성되며 학부 내 전공교과목으로 구성된 전공심화모듈도 이에 준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8.09.01.>

제 34 조(개설요건) 연계교육프로그램은 최소 9학점 이상을 개설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01.>

제 35 조(이수신청) 연계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려고 하는 자는 지도교수와 상담을 통하여 본인의 진로와 관련된 연계교육과정을 소정기간 중에 학생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09.01., 2018.09.01.>

제 36 조(승인요건) <삭제 2010.09.01>

제 37 조(이수요건) <삭제 2010.09.01>

제 38 조(이수연한 및 졸업)<삭제 2010.09.01>

제 39 조(변경) 연계교육프로그램 이수 신청자가 사정에 의하여 동 이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도교수와 면담을 통하여 연계교육프로그램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8.09.01.>

3-1-2-10 제1장 학부

제 40 조(이수증수여) 연계교육프로그램 이수 신청자가 이수조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이수증을 수여한다.

[본조신설 2018.09.01.]

제 8 장 수 강 신 청

제 41 조(수강신청절차 및 신청학점) ① 매 학기 별도로 정하는 수강신청기간에 학생지원시스템의 교육과정을 참조하여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은 후 수강신청시스템에서 본인이 직접 입력한다.

② 최대신청 학점은 매학기 1학년 18학점 그 외의 학년은 19학점으로 한다. <개정 2009.09.01., 2014.01.01., 2017.09.01.>

제 42 조(실격과목 재수강) 실격된 과목은 재수강할 수 있다.

제 43 조(불신청 이수)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이수한 과목의 성적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 44 조(신청과목의 변경 및 취소) ① 개강 후 수강신청변경기간 내에 신청과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수강신청변경기간 이후에 수강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수강변경신청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09.01.>

② 선수과목을 취득하지 않은 학생, 학업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학생, 수업진행을 크게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서 담당교수는 학부장에게 통보하여 학생의 수강등록을 취소케 할 수 있다.

③ 수강취소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45 조(과목번호) 수강교과목의 교과목번호는 정확히 입력하여야 한다.

제 46 조(초과신청학점의 무효) 학칙 제32조에 정한 학기 또는 학년당 수강신청 학점을 초과하였을 경우 일부과목을 무효로 처리한다. 단,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기당 1학년은 3학점까지 기타 학년은 2학점까지 초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03.01.>

1. 복수전공/연계전공/부전공/연계부전공/교직신청자 <개정 2012.03.01>

2. 능력별 조기졸업 대상자
3. 직전학기 성적 4.3이상인자
4. 동서글로벌프로그램 신청자
5. 국외 타대학 복수학위 신청자 <개정 2009.12.04>
6. 졸업학점 140학점이상인 학과(전공) 단, 건축설계학과는 제외 <개정 2010.09.01.>
7.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신청자 <신설 2017.03.01.>
8. 학석사연계과정에서 선발된 자 <신설 2017.09.01.>
9. 기타 교무처장의 승인을 득한 자

제 47 조(중복수강금지) 동일 교시에 중복 수강신청한 과목은 그 성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 48 조(교육실습 신청) 교직과목을 이수하는 학생은 제4학년 1학기에 교육실습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 49 조(수강지도) 수강신청은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 취득을 위해 교과목 이수구분별로 수강신청 절차에 따라 소정기간 내에 수강지도를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01.>

제 50 조(재수강) ① 학업성적이 F등급 교과목은 소정의 절차를 밟아 재수강할 수 있다.

② 재수강 최고학점은 B+로 제한 한다. <신설 2015.03.01.>

③ 재수강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9 장 성적의 평가

제 51 조(성적의 등급, 평정 및 분포와 평가) ① 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에 의한다.

1.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학칙 제44조에 의한다.
2. 학업성적 평점평균의 산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frac{(\text{교과목평점} \times \text{학점수})\text{의합계}}{\text{수강신청총학점수}}$$

3-1-2-12 제1장 학부

② 학업성적의 등급분포 비율은 다음 기준에 의한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절대평가를 할 수도 있다.<개정 2009.12.04.><개정 2012.05.01.>

A+, A	0-30%	B+, B	0-40%
C+, C	0-40%	D+, D	0-30%
F	0-20%		

③ 성적평가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과목의 성적은 담당교수가 학생의 출석, 시험성적 및 과제물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수시평가는 학기 중 수시로 행하고 기말시험은 이론과목에 한하여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단, 채플, 실험실습, 실기 및 이에 준하는 특수 교과목의 성적은 별도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5.03.01., 2018.09.01>

2. 학업성적의 평가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가. 출 석 : 10 - 20 %

나. 시 험 : 50 - 80 % <개정 2015.03.01.>

다. 과제물 등 : 10 - 30 % <개정 2015.03.01.>

④ 성적정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성적정정기간은 다음 학기 현금등록개시일 이전으로 한다.

2. 성적정정원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부장 및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 교무처에 제출한다.

제 52 조(성적불량 학점포기 및 삭제)① 취득한 학점은 포기할 수 없다. 다만, 교과목이 폐지되어 재수강이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7학기를 이수 후 취득학점 포기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1회에 한하여 최대 9학점까지 취득학점을 포기할 수 있다. <개정 2010.03.01., 2014.03.01>

② 학생의 신청으로 학점포기된 과목의 교과목은 복원처리되지 않는다.

③ 성적을 포기한 교과목은 기 취득한 학기에서 삭제되어 취득학점과 평점 계산에서 제외되

며, 이미 취득한 성적에 의거 처리된 장학생 선정 및 학사경고 등 각종 조치는 유효하다.

제 10 장 학 사 경 고

제 53 조(학사경고) 재학중 매 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1.5미만인 자에게는 학사경고를 하되 다음 학기 개강 전에 본인과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학적부 상벌란에 기재한다.

단, 졸업 마지막 학기는 학사경고를 면제한다.

제 54 조(제적처분) 재학기간 중 연속 3회 또는 통산 4회의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제적 처분한다.

<개정 2010.01.01., 2015.03.01.>

제 11 장 출 석 과 결 석

제 55 조(출석) ① 지각 3회나 조퇴 3회는 결석 1일로 인정한다.

② 담당교수는 매주 담당수업시간 후 출결관리시스템에 수강학생의 출결사항을 입력 하여야 한다. <신설 2015.03.01.>

제 56 조(출석인정) ① 유고결석 사유가 있을 경우 결석사유 발생 전후 1주 이내에 유고결석계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결석기간의 출석을 인정한다.

② 유고결석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09.01.]

제 57 조(질병결석의 출석인정) ~~질병으로 결석하였을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유고 결석계를 제출하면 학기당 2주 이내의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삭제 2018.09.01.>

제 58 조(유고결석계의 제출 시기, 장소) ① 유고결석계는 결석사유 발생 전후 1주 이내에 해당사

~~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56조 제3호 또는 제4호에 의한 출석인정은 관련 시행 부서장이 교무처장에게 그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09.01.>

③ 유고결석케나 확인문서를 접수한 교무처장은 해당 학생에게 유고결석허기증을 발부하며, 해당 학생은 결석과목 담당교수에게 유고결석 허기증을 제시하여 출석인정을 받는다.

<삭제 2018.09.01.>

제 12 장 휴보강 관리

제59조 (휴강) 휴강은 법정공휴일에 의한 휴강, 교내공식행사에 의한 휴강, 공무출장에 의한 휴강, 개인출장에 의한 휴강 등으로 구분한다.

[본조신설 2015.03.01.]

제60조 (보강방법) ①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이 된 날을 말하며 이로 인하여 수업의 결손이 생겼을 경우 보강주간에 보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교내 공식행사(학술엑스포, 민석축제, 개교기념일, 심화학습 및 체육대회, 수시면접 등)에 의하여 수업의 결손이 생겼을 경우 보강주간에 보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공무출장일 경우 출장 결재를 득한 후에 보강계획을 입력하고 계획에 따라 보강하여야 한다.

④ 개인출장은 학기 중 출장을 원칙 적으로 금한다. 단, 출장승인을 득한 경우 보강계획을 입력하고 계획에 따라 보강하여야 한다.

⑤ 기타의 경우는 사유 발생 즉시 휴강 사유와 함께 보강계획을 입력하고 계획에 따라 보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03.01.]

제61조(휴강제한) 특별한 사유 없이 휴강 후 보강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학기 강의를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03.01.]

제 13 장 편입학생의 학점인정

제 62 조(인정과목과 학점) ① 전적학교에서 이수한 교과목중 유사한 과목에 대하여 대학 정책과목, 일반교양과목, 학부기초과목, 전공과목 순으로 해당 교과목의 학점을 인정하고, 본 대학교의 교과과정상 필히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은 지정 이수과목으로 지정하여 이수하게 할 수 있다.

② 편입이전 학년의 학점인정은 학칙 제32조의1의 수료학점을 초과 할 수 없다. <신설 2015.03.01.>

제 63 조(인정절차) 학점의 인정은 전공 책임교수의 사정안을 교무처장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64 조(성적표기) 이수가 인정된 교과목의 이수학점은 이수구분별 인정학점을 성적표에 표기한다.

제 65 조(상이학점인정) 전적학교에서 이수한 과목별 학점이 본 대학교와 상이할 경우에는 본 대학교의 학점 수에 맞추어 인정한다.

제 66 조(전문대학과의 연계교육협약) 양 대학 연계교육협약에 의하여 전공별 연계교육과정은 양 대학 교류전공간의 합의에 따른다.

제 14 장 교과과정의 이수

제 67 조(교과이수) ① 학칙 제28조에 의거하여 이수하여야 할 교과과정은 이수학년 교과과정에

의한다.

② 편입학, 복학, 재입학한 자가 교과과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입학년도 기준의 교과과정을 이수할 수 없을 때에는 수강하고자 하는 연도의 교과과정표에 의거 개설된 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사회봉사의 경우는 교양으로 학점을 인정 할 수 있다. <개정 2011.09.01>

제 15 장 졸업종합시험

제 68 조(졸업종합시험) ① 졸업예정자는 졸업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졸업종합시험은 영어, 컴퓨터 및 전공과목으로 하고 모두 합격하여야 한다. 단, 2018학년부터 영어졸업인증시험은 폐지한다. <개정 2017.09.01., 2018.09.01>

② 영어는 필답고사를 실시하되 계열별(인문·자연계열, 예·체능계열)로 출제 난이도를 달리 출제한다. 단, 2008학년부터 영어시험은 영어졸업인증시험으로 적용한다. <개정 2008. 3. 1, 2011. 3. 1>

③ 컴퓨터는 학부(전공)특성에 부합되는 컴퓨터 관련 과목으로 학부별로 실시한다.

④ 전공과목은 전공별로 3과목 이상으로 하고 전공별로 실시한다.

⑤ 영어와 컴퓨터시험은 3학년 2학기(10월 중), 4학년1학기(5월 중)에 실시하고, 전공과목은 4학년 2학기에 실시한다.

⑥ 졸업종합시험은 매과목당 100점만점으로 하고, 매과목당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단, 2008학년부터 영어졸업시험은 제97조에 준한다. <개정 2008. 3. 1, 2011. 3. 1, 2012.03.01., 2017.09.01.>

⑦ 졸업종합시험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8.09.01.>

⑧ 영어트랙 소속 외국인 학생의 경우 영어졸업시험을 면제한다. 단, 2018학번부터 영어졸업 인증시험을 폐지한다. <신설 2017.09.01.> <개정 2018.09.01.>

⑨ 영어트랙에 속하지 않은 외국인 학생의 경우 '토픽(TOPIK)' 4급 이상 취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학과정에 따른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8.09.01.>

제 69 조(졸업종합시험의 면제) 다음과 같은 경우는 졸업종합시험과목을 부분적으로 면제할 수 있다. 단, 졸업 마지막 학기에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자, 국외교류대학에 3학년 이후 4학기 이상 학점교류 수학자는 졸업종합시험을 면제 할 수 있다. <개정 2009.12.04., 2010.12.10>

1. 영어과목 면제(단, 2008학번 이전 입학생만 적용한다) <개정 2008. 3. 1, 2011. 3. 1>

가. 대학정책과목(인문계열 18학점, 자연계열 및 예·체능계열 12학점)의 총 평균평점이 4.0이상인자, 단 본 대학(부속기관 포함)에서 실제이수학점이 인문계열 18학점, 자연계열 12학점이 안될 경우는 제외한다.

나. 재학중 TOEIC 또는 TOEFL 등의 시험에서 일정점수 이상을 취득한 자.

ㄱ. TOEIC은 인문계열 650점, 자연계열 600점, 예·체능계열 500점 이상 취득한 자. (공인시험과 교내모의고사 성적을 포함)

ㄴ. TOEFL(CBT)은 인문계열 200점, 자연계열 180점, 예·체능계열 160점 이상 취득한 자. (공인시험만 해당)

다. 영어캠프에 2회 이상 참가한 자(수료증 사본 첨부)

라. 영어권 국가에 4주 이상 어학연수를 다녀온 자 (등록증 사본 첨부)

마. 교내(대학주최) 및 교외(광역시·도 이상)의 각종 영어경시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한 자(상장 사본 첨부)

바. 영어과목을 정규과정(대체과목 포함)외 어학당에서 2분기(14주) 이상 수강한 자.

사. Work and Travel, 해외 Internship 등에 4주 이상 해외연수 프로그램 이수자 (관

3-1-2-18 제1장 학부

런서류 첨부)

아. 국제기술봉사단에 참여한 학생(Tech. Corps, NGO 등)

자. 동서글로벌프로그램 이수자(관련서류 첨부) <개정 2007.5.1>

2. 컴퓨터과목 면제

가. 대학정책과목(전 계열 12학점)의 총평균평점이4.0 이상인 자. 단 본 대학에서 (부속기관 포함) 실제이수학점이 12학점이 안될 경우는 제외한다.

나. PCT 600점 이상인 자

다. 자격증 취득자

ㄱ. Solaris 자격증 취득자 : CSA I, II (Certified Solaris Administrator)

ㄴ. Network 자격증 취득자 : SCNA (Sun Certified Network Administrator)

ㄷ. Java 자격증 취득자 : SCJP(Sun Certified Java Programmer)

SCJD(Sun Certified Java Developer)

ㄹ. Microsoft Office프로그램관련 자격증(MOS 마스터, ITQ OA마스터, ICDL Start Certificate)<개정 2010.11.01>

라. 교내(대학규모) 및 교외(광역시·도 이상) 컴퓨터관련 경시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한 자 (상장 사본 첨부)

3. 전공과목 면제

가. 각 전공에서 지정한 전공관련 자격증을 재학 중 1개 이상 취득한 자.

나. 자격증의 심사는 전공에서 판단하여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다. 졸업논문 또는 실기발표를 선택한 자.

라. 전국 대학생 학술논문 발표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한 자.(상장 사본 첨부)

제 70 조(졸업종합시험의 대체) ① 교과과정의 성질상 졸업논문과 실기발표(작품발표) 등으로 졸업

종합시험을 대체 할 수 있다. <개정 2018.09.01.>

② 제1항에 의해 졸업종합시험을 대체할 경우 영어졸업 인증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단, 2018학번부터 영어졸업인증시험을 폐지한다. <개정 2018.09.01.>

③ 졸업논문인 경우 3명까지 공동으로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8.09.01.>

④ 실기발표(작품발표)는 실기발표와 더불어 영어, 컴퓨터중 한과목을 선택하여 60점 이상이어야 한다. 단, 제66조 1), 2)항에 적용될 수도 있다. <개정 2012.03.01.> <삭제 2018.09.01.>

⑤ 2008학번 부터 졸업논문, 실기발표(작품발표) 선택시 필히 영어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영어시험은 제97조 영어졸업인증제로 실시한다. <개정 2008. 3. 1, 2011. 3. 1, 2012.03.01., 2017.09.01.> <삭제 2018.09.01.>

제 71 조(논문 등의 지도) ① 학부에서는 제출된 논문 및 실기(작품) 계획서에 따라 지도교수를 배정하고, 지도교수는 논문작성 또는 실기(작품) 제작, 연구윤리 등을 지도한다. <개정 2008. 3. 1, 2018.09.01>

② 논문지도는 지도교수 1인당 10인 이내의 학생을 지도함을 원칙으로 한다. <삭제 2018.09.01.>

제 72 조(논문 등의 분량) 졸업논문, 실기(작품)의 분량은 학부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09.01.>

제 73 조(실기(작품)의 지도, 심사 및 평가) ① 실기(작품) 발표를 하는 전공의 졸업예정자는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졸업작품을 제출하며, 학부에 따라 별도의 보고서를 제출한다. <개정 2018.09.01.>

② 발표한 실기(작품)은 학부에서 소정기간 내에 심사하고 평가한다. <신설 2018.09.01.>

제 74 조(논문 등 심사위원 위촉) ① 학부에서는 매 학기 졸업논문, 실기(작품) 심사 전에 심사위

3-1-2-20 제1장 학부

원을 위촉하여 심사한다. <개정 2008. 3. 1, 2018.09.01.>

② 졸업논문, 실기(작품) 심사는 2명 이상의 전임교원이 담당하며, 지도교수도 포함될 수 있다. <개정 2018.09.01.>

제 75 조(논문 등 심사 및 합격) ① 졸업논문, 실기(작품)의 심사는 심사위원 전원 C등급 이상일 경우 합격으로 한다. <개정 2018.09.01.>

② 논문심사는 논문제출 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완결하고 심사위원은 심사요지서를 소속 전공 책임교수에게 제출하고 전공 책임교수는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76 조(논문 등의 제출) ① 졸업논문, 실기(작품) 결과보고서는 전기 졸업자의 경우 매년 12월 말, 후기졸업자의 경우 6월말까지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01.>

② 보고서는 2부 제출하여야 하며, 작품의 경우에는 작품 또는 그 증거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77 조(논문 및 작품의 발표) ① 논문, 실기(작품)는 제출 전에 공개적으로 발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학부에 따라 시행한다. <개정 2018.09.01.>

② 실기 또는 작품의 발표는 개인 또는 공동으로 하되 모두 공개발표로 한다.

제 78 조(논문 등의 형식) 논문, 실기(작품)의 형식은 학부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8.09.01.>

제 79 조(논문 등의 무효) 졸업논문, 실기(작품)에서 연구윤리 위반 등의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무효로 처리하고 졸업을 유보한다. <개정 2018.09.01.>

제 80 조(논문 등 불합격자에 대한 조치) ① 논문, 실기(작품) 심사에 불합격한 경우, 소정기간 내에 추가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8.09.01.>

② 논문제출 기간은 1회 심사 완료 후 2년 이내로 하되 군입대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삭제 2018.09.01.>

③ 소정기간 내에 졸업논문, 실기(작품)을 합격으로 판정받지 않은 경우에는 졸업을 유보한다.

<개정 2018.09.01.>

제 81 조(각종 양식 제정) 졸업논문, 실기(작품) 발표에 필요한 각종 양식은 각 학부별로 정하여 사용한다. <개정 2018.09.01.>

제 16 장 졸업의 기준

제 82 조(졸업의 기준) 졸업사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등록학기는 4년 8학기 이상이어야 한다. 단, 조기졸업은 예외로 한다.
2. 취득학점은 총계 130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단, 건축설계학전공(2004년도 입학자부터) 165학점, 임상병리학과, 간호학과, 방사선학과, 치위생학과, 작업치료학과는 140학점으로 한다. <개정 2012.03.01>
3. 교과과정 이수조건은 각 전공마다 규정된 교양과목(대학정책과목, 교양선택과목, 학부기초과목), 전공필수과목, 전공선택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03.01., 2018.09.01>

제 17 장 능력별 조기졸업

제 83 조(자격) ① 능력별 조기졸업 대상자는 6개학기 이상 수강하여 졸업학점에 도달한 자로 총 이수학점의 평균평점이 4.30이상이어야 한다. 단, 재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이 있는 경우와 계절학기를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② 편입, 재입학생은 조기졸업 대상이 될 수 없다.

③ 능력별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자는 최종학기 개강 1주 이전에 능력별 조기졸업 희망 신청을 교무처장에게 제출,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8 장 계 절 학 기

제 84 조(대상) 계절학기에서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85 조(등록금) 계절학기의 등록금은 별도로 정한다.

제 19 장 학 점 등 록

제 86 조(학점등록 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학점등록을 할 수 있다.

1. 8학기를 이수하고 졸업에 필요한 소정학점을 취득하지 못한자중 미취득 학점이 6학점 이하인 자 <개정 2010.02.01>
2. 학칙 34조의 3에 의한 졸업유예를 득한 자 <개정 2010.02.01>

제 87 조(학점등록금) ① 학점등록금은 수강과목 학점당 금액(수업료 x 1/18)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1>

- ② 학점단위가 소숫점 이하일 때는 소숫점 이하는 절상한다.
- ③ 재입학생 중 학점등록 대상학생은 제1항에 의거한 학점등록금과 재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④ 졸업에 필요한 소정 학점을 모두 이수하고 졸업논문 불합격으로 졸업이 보류된 학생은 졸업논문지도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⑤ 학점등록은 해당 학기 등록기간 내에 교무처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등록하여야 한다.

제 20 장 재 입 학

제 88 조(대상) 재입학은 다음 각 호의 1의 해당자에 한하여 허가한다.

- ① 학칙 제26조에 의한 퇴학자.
- ② 학칙 제27조에 의한 제적자.

제 89 조(학년) 재입학은 제적 당시와 동일한 전공으로 재입학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90 조(시기) 제적일로부터 1학기 경과후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 91 조(절차) 재입학 희망자는 전공책임교수, 학부장, 교무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92 조 (학점인정) ① 재학 당시의 취득 학점을 인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인하 재입학시는 인하된 학년, 학기의 취득학점은 취소한다.

- ② 재입학 후의 교과과정 적용은 재입학시 학년, 학기부터 적용한다.

제 21 장 현장실습

제 93 조(실습시간 및 이수) 현장실습은 32시간 이상 실습하도록 하며, 학점은 p로 한다. 단, 학기(계절학기 포함)중 4주 이상 현장실습 참가자에 대해 학기당 30시간 이수한 경우 이를 1학점으로 인정하고 최대 15학점 이내로 한다. 단, 해외인턴십은 최대 18학점 이내로 한다.

제 94 조(개설) 현장실습 강좌는 총장이 각 전 공별로 3,4학년 각 학기에 개설하며 각 전공, 각 학년의 지도교수는 현장실습의 담당교수가 되며 현장실습의 결과 및 현장실 습의 성적 및 이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95 조(산업체, 실습시기 및 평가) ① 산업 체 선정 및 실습시기는 별도로 정한다.

- ② 현장실습 평가 등 세부사항은 별도내규에 의한다.

제 96 조(정부실업대책의 실습인정) 노동부, 중소기업청 등 정부기관에서 시행하는 청소년실업대책(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연수지원제도, 인턴취업지원제도, 중소기업현장체험활동 등) 참가자

도 현장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며 평가 등은 현장실습내규에 의한다.

제 22 장 영어졸업인증제 <신설 2008. 3. 1>

제 97 조(영어졸업인증)①소정의 전 교육과정의 교과목 이수구분에 따라 소요 학점을 모두 충족하여 각 과정별로 수료한 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합격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

1. 전계열 DSU-CBT 영어졸업인증 시험 400점이상을 취득 하여야 한다.

② 예체능계열은 DSU-CBT 영어졸업인증제 대신 DSU-EST를 선택 할 수도 있다.

단, 영화학과는 제외한다.

1. DSU-EST는 3학년부터 영어회화 시간에 외국인과의 Oral Test를 실시하여 아래와 같이 4등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1>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점수	0~11	12~17	18~23	24~29	30~35	36~40

③ 외국인 학생의 경우는 ‘TOPIK’ 또는 ‘DSU-한국어 능력시험’ 을 선택할 수도 있다. <신설 2011. 3. 1>

1. ‘TOPIK’ 또는 ‘DSU-한국어능력시험’ 을 선택하였을 경우 4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2. 2011학년도 신·편입학생부터 적용 한다.

④ 2008학번부터 적용한다. 단, 2008학번 이전 학생은 DSU-CBT 영어졸업인증시험을 신청시 적용할 수도 있다.

제 23 장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 운영 <신설 2014. 03. 01>

제 98 조(창업휴학)① 휴학사유가 창업으로 인정될 경우 최대 2년(4학기) 연속으로 휴학이 가능하

다.

② 창업휴학시 휴학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창업계획서 1부 등을 첨부하여 창업지원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1항의 경우로 휴학하는 경우는 휴학 기간에 합산하지 않는다.

제 99 조(창업 대체학점 인정)①창업동아리 활동을 현장실습교과로 인정하여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평가한 후 최대 3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 현장실습교과로 인정할 수 있는 창업동아리 활동은 별도로 정한다.

제 100 조(창업학점 교류제)①창업강좌를 계절학기에 개설하여 타 대학 학생이 수강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② 계절 학기에 개설하는 창업강좌는 별도로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3-1-2-26 제1장 학부

1. (개정시행) 이 개정세칙은 199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개정세칙은 1995학년도 졸업예정자에게는 졸업논문계획서 제출 마감일을 1995년 5월 15일까지로 연기하여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199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1996학년도 이전 학과별 모집정원으로 입학한 학생은 개정전 학칙시행세칙을 적용하되, 개정학칙시행세칙을 적용하여도 불이익이 없을 경우(단순한 행정 절차상의 명칭 및 서식 등)에는 개정학칙시행세칙을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개정 이후부터 시행하되, 199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경과조치) 이 개정 세칙 중 제12조 졸업종합시험은 1999학년도 입학한 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2000년3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개정 이후부터 시행하되, 199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경과조치) 이 개정 세칙은 1999학년도에 입학한 학생부터 적용하고 이전 입학자는 이전학칙을 적용한다. 단 1999학번과 함께 졸업하는 학생은 개정된 학칙에 따른다.

부 칙

3-1-2-28 제1장 학부

1. (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2001년8월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 시행세칙은 2002년2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 시행세칙은 2002년3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 시행세칙은 2003년3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 시행세칙은 2003년5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 시행세칙은 2004년4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 시행세칙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200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개정된 학칙시행세칙은 2005년 2월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200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직제규정 2008.1.30>

1. 이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2. (다른 규정의 개정) ① - ⑮ 생략
- ⑯ 학칙시행세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 제3호 중

‘학생취업복지처장’ 을 ‘학생복지처장’ 으로 한다.

⑰ - ㉑ 생략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2008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2009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2009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직제규정 2010.09.01>

1. 이 개정규정은 2010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 (다른 규정의 개정) ① 생략
② 학칙시행세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 제3호 중
‘학생복지처장’ 을 ‘학생취업복지처장’ 으로 한다.
③ - ⑦ 생략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2010년10월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2010년11월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2010년12월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2011년03월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3-1-2-32 제1장 학부

1. (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2011년09월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2012년03월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2012년05월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2012년06월0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2013년03월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2014년01월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취득학점의 포기에 관한 경과조치) 취득학점포기에 관한 조항 제52조는 2014년 1학기 취득학점부터 적용한다.

3. (재수강 변경사항에 관한 경과 조치) 재수강에 관한 제50조는 1항은 2014학년도 제2학기 수강신청 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2014년09월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① 제54조(제적처분)의 학사경고 통산 4회
제적의 경우는 201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56조(출석인정)의 취업에 따른 출석 인정의
적용 시점은 2016년 2학기 개강일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